무배당 Sh어업인상해공제 2501

약 관

◆계약안내

- ◆ 이 약관은 공제계약상의 권리의무와 기타 중요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꼭 읽어 보 시기 바랍니다.
- ◆ 청약서상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셔야 합니다.
- ◆ 과거의 건강상태,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해상태, 현재의 직업(취급업무)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셔야 공제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 ◆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 계약안내·····	01
■ 공제약관 요약서	03
■ 무배당 Sh어업인상해공제2501 주계약 약관 ·····	13
■ 무배당 Sh어업인상해공제2501 특약 약관 ·····	33
1. 무배당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34
2. 무배당 재해수술특약 약관	······ 42
3. 무배당 골절치료특약 약관	······ 49
4. 무배당 재해입원특약 약관	······ 56
5. 이륜자동차개인형전동장치운전중상해부보장특약 약관	64
6.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 약관	······ 66
■ [별표 A~D] ·····	······ 70

쉽게 이해하는 공제약관 요약서



1. 공제계약의 개요

◆ 공제회사명 : 수산업협동조합

◆ 공제상품명: 무배당 Sh어업인상해공제2501

◆ 공제상품의 종목 : 보장성·상해공제

1. 상품의 주요 특징

이 상품은 각종 재해를 중점 보장하는 어업인 전용 보장성공제로 재해(수상운수 사고 포함)로 인한 사망을 중점보장하며, 특약 가입 시 재해로 인한 장해, 입원, 수술, 골절을 추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어업인상해	보장성공제	금리확정형	법률에 의한 지급보장*
[어업인 전용 보장성 공제]	[사망,상해 등]	[적용금리 고정]	[1인당 최고 5천만원]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급보장(「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상기 특별법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ᆸᅺᅜᄀᆀ	이 상품은 각종 재해를 중점 보장하는 보장성공제이며,		
보장성공제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금리확정형	이 상품의 계약자 공제료 및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		
	은 2.75%로 고정됩니다.		

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 공제금 지급제한 사항

이 공제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이 아래와 같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 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면책기간

이 공제에는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없습니다.

② 감액지급

이 공제에는 일정기간 동안 공제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없습니다.

③ 보장한도

이 공제에는 공제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구 분	급 부 명	보장한도
ᄁᆘᆌᄭᆉᆌᆔᄭᄐᅂ	재해소득	최초 1회 한,
재해장해보장특약	보상급여금	「10년간 매년」확정 지급 (총 10회)
재해입원특약	재해입원급여금	1회 입원당 지급일수는 120일 한도로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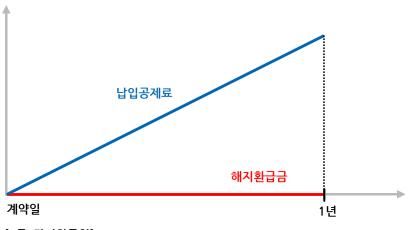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수협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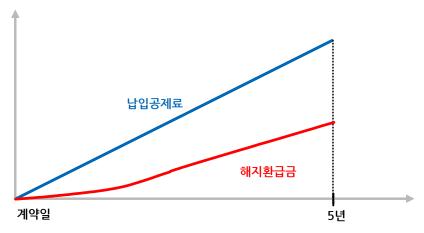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 납입한 공제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 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공제료를 차감하여 지급

[1종 순수보장형]



[2종 만기환급형]



※ 자세한 내용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3. 갱신시 공제료 인상 가능성

이 공제에는 갱신시 공제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① 이 공제는 재해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공제이며, 저축 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장성공제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공제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 니다 이 공제계약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에 의하 에 따라 ①연금저축공제(해지화급금) ②사고공제금 ③기타공제금(해지 지급보장 화급금 또는 만기시 공제금) 각각에 대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분 리하여 보호됩니다.

5. 기타 공제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① 소멸사유

- ①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공제금 지 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 ②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협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납입면제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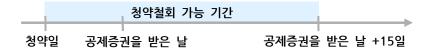
이 상품은 공제료 납입기간 중 공제료 납입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Ⅲ. 공제계약의 일반사항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 제17조(청약의 철회)

공제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제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협은 3일 이내에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주의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수협이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 문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계약을 취소함 수 있는 권리

주계약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공제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을 청약할 때 공제약관 및 공제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 한 경우
- 공제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공제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취소시 지급하는 금액 = 납입한 공제료 + 이자
계약 취소 기간
계약이 성립한 날 계약이 성립한 날 +3개월

3. 공제계약의 무효

주계약 제19조(계약의 무효)

수협은 다음의 경우 공제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공제계약에서 피공제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피공 제자 지정)로 한 경우
- 공제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공제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주계약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 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청약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수협은 계약해지 또는 보장제한 가능

주의

-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권유직원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공제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공제계약의 경우 수협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 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민원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권유자에게 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공제금 청구

▶ 수현은 공제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공제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지식

[대법원 2007.06.28. 선고 2006다59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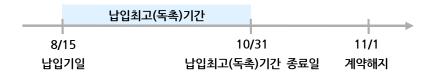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권유자)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수협)를 대리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5. 공제료 납입연체 및 공제계약의 해지

주계약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수협은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 (독촉)기간 내에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공제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연체: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이거나 유니버셜 상품에서 월대체공제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납입최고(독촉) 기간: 14일 이상(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6. 해지된 공제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주계약 제28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공제료 납입연체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제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

수협은 피공제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 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하**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수령시 부활청약 가능]



7. 공제계약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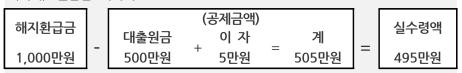
주계약 제34조(공제계약대출)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공제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주의

- 상화하지 않은 공제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지화급금 또는 공제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공제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순수보장성공제 등 공제상품 종류에 따라 공제계약대출이 제하될 수 있습니다.

〈예시〉 화급금 내역서



8. 공제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 제7조(공제금의 청구)

공제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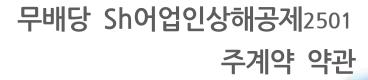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영업일)

주의

소액 공제금 청구 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 가 있으니, 공제금 청구 전에 수협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금 청구서류			
구분	공통 서류	기타서류(해당 시)	
사망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상속관계확인서류	
장해		장해진단서	
진단	공제금청구서, 신분증,	진단서, 진단사실확인서류(검사결과지 등)	
입원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수익자 통장사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		진단서, 수술확인서	
실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 피공제자, 공제금 청구 사유에 따라 가족관계확인서류, 사고사실확인서류, 치 아진료확인서, 진료차트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Sh어업인상해공제2501 주계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수협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 사이에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공제수익자 :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협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공제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협이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공제자 :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재해분류표(별표B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재해분류표"라 합니다)에 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수협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 수협이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 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해지화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수현이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 한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공제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 수협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공제금의 지급

제3조 [공제금의 지급사유]

수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 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

- 1.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만기축하금(단, 2종 만기환 급형에 하함)
- 2.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재해사망 공제금

제4조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2호 "사망"에는 공제기간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향후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공제자가 사망하는 경우, 공제금 지급여부의 판단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망 시점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공제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 사유(질병, 재해 또는 고의로 "자신 또는 피공 제자"를 해친 경우)로 합니다.
- ③ 공제수익자와 수협이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합의하지 못할 때는 공제수익자와 수협이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수협이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수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해당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2.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수익자 에 대한 공제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제6조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나 공제수익자는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협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공제금의 청구)

- ① 공제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수협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공제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공제금의 지급절차]

- ① 수협은 제7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② 수협은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공제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수협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때 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A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수협이 공제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공제금 가지급제도(수협이 추정하는 공제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공제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수협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4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라 공제금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공제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이내에 공제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공제금의 일부를 먼 저 지급하는 제도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협은 공제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수협이 추정하는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공제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수협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수협은 공제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수협은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 (공제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공제수익자)는 수협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른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수협은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공제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공제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수협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수협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수협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공제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공제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공제수익자를 제3조(공제 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피공제자의 법정상 속인으로 합니다.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 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 여 수협이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하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공제계약자나 피공 제자는 청약시에 수협이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공제계약의 해지 또는 공제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공제계약을 청약하면서 직원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 라도 수협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수협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수협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수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수협이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수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공제를 모집한 수협의 직원 또는 공제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직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수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 습니다
- ④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의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수협이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⑤ 수협은 다른 공제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 이 성립되었음을 수협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 [공제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수협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수협은 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공제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수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수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수협은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수협이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이 약관 제28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 3항 및 제4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7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공제계약자

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의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정의)제34호 및 제3조(전문공제계약 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공제계약자 등의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수협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수협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공제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수협은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공제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수협이 이를 증명하여 야 합니다.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수협은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 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수협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 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 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 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공제료 납입, 공제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수협이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 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 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공제자가 동일하고 공제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협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 려 드립니다. 다만, 수협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수협이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협은 이 계약의 공제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공제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단체공제의 공제수익자를 피공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공제의 피공제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 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공제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수협이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 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 은 아닙니다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수협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공제가입금액
 - 2. 계약자
 - 3.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공제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협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공제수익자가 수협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공제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수협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수협은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수협이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안내한 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공제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공제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⑤ 수협이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공제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1조 [피공제자의 변경]

- ① 계약자가 공제료를 전액 부담하는 계약(다만, 피공제자가 공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피공제자의 동의 및 수협의 승낙을 얻은 후 피공제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피공제자는 변경전의 피공제자와 같은 성(性)에 한합니다.
 - 1. 피공제자가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업을 중단(일시적 중단 포함)하거나 어업 관련 고용관계를 끝내는 경우
 - 2. 피공제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② 수협은 새로운 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피공제자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공제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피공제자의 변경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공제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23조(계약의 소멸) 및 제24조(제1회 공제료 및 수협의 보장개시) 제2항 내지 제4항을 따릅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변경되는 피공제자는 피공제자 변경신청서(수협양식)를 접수한 때부터 피공제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수협은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새로운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
-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제22조 【공제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공제자의 나이는 공제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제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공제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공제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공제금 및 공제료로 변경합니다.

공제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90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5년 4월 13일

⇒ 2025년 4월 13일 - 1990년 10월 2일 = 34년 6월 11일 = 35세

제23조 【계약의 소멸】

- ①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수협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 중 일정액을 수 협이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5관 공제료의 납입

제24조 【제1회 공제료 및 수혐의 보장개시】

- ① 수협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수협이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수협이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수협이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수협이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수협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수협에 알린 내용이

- 나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수협이 증명하 는 경우
-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수협이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청약서에 피공제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공제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 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수협은 계약자가 공 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 합니다)를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 로 대신합니다.

난인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 【공제료의 자동대출납입】

이 계약은 공제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7조 【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수협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수협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공제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제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 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공제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수협이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수협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 【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27조(공제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공제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수 있습니다. 수협이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수협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공제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공제료 및 수협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제29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수협은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공제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얻어 계약 해지로 수협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수협에게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공제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공제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수협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수협은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공제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협은 법정 상속인이 공제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수현은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공제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화급금 등

제3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공제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 협은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공제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수협이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수협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 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수협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협은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2조 【수협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수협이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수협은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 [해지화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수협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수협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A 참조)에 따릅니다.
- ③ 수협은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4조 [공제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수협이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공제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공제 등 공제상품의 종류에 따라 공제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수협은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 금에서 공제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협은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공 제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수협은 공제수익자에게 공제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공제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36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수협은 수협중 앙회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다만, 수협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만기축하금청구권, 공제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후 3년간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약관의 해석】

- ① 수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수협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수협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0조 [수협이 제작한 공제안내자료 등의 효력]

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수협 제작의 공제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 【수협의 손해배상책임】

- ① 수협은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 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수협은 공제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수협이 공제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공제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수협은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2조 【개인정보보호】

① 수협은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협은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제(보험)회사 및 공제(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수협은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3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4조 【법률에 의한 지급보장】

수협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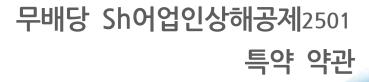
【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 사망공제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3,000만원
만기축하금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 있을 경우 (단, 2종 만기환급형에 한함)	기납입공제료의 50%

주)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배당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수협(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업종 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 사이에 제3조(공제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공제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특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수협과 특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공제수익자 :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협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공제증권 :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협이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공제자 :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재해분류표(별표B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재해분류표"라 합니다)에 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강해 : 강해분류표(별표C "강해분류표" 참조, 이하 "강해분류표"라 합니다)에 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강해상태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수협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특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 수협이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수협이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공제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 수협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공제금의 지급

제3조 [공제금의 지급사유]

수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급여금을 지급합니다.(별표2 "공제금 지급기준표"참조)

- 1.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소득보상급여금(1회 한함)
- 2.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3%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급여금

제4조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제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공제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④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 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⑤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재해장해급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 위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⑨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⑩ 이 특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⑪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② 계약자(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공제수익자)는 수협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재해소득보상급여금의 전부에 대 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재해소득보상급여금의 공제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수협은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⑩ 공제수익자와 수협이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공제수익자와 수협이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수협이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수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해당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2.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수익자 에 대한 공제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제6조 [공제금의 청구]

- ① 공제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수협양식)
 -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공제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공제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공제금의 지급절차]

- ① 수협은 제6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② 수협은 제1항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때 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A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8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특약의 해지]

수협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수협은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립니다.

제4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9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수협이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다음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3.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재해소득보상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협이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 중 일정액을 수협이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10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특약의 공제기간 중 수협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수협은 계약자가 특약의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수협이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관 공제료의 납입

제11조 【특약의 공제료 및 수협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공제료는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공제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공제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수협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2조 [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수협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수협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공제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제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③ 수협이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수협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 [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수협은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 협은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 [해지화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수협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수협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A 참조)에 따릅니다.
- ③ 수협은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1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2】

공제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нтоо	ΛΙΠΛΙΤΙ	~1807	
재해소득보상 급여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 해지급률이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 (최초 1회한)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매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300만원씩 10회 확정지급	
재해장해 급여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 해지급률이 3% 이상 80% 미만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주) 1. 재해소득보상급여금의 경우 공제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평균공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중 큰 금액 을 지급합니다.
 - 2.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협이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3. 재해소득보상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배당 재해수술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수협(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업종 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 사이에 제3조(공제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공제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특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수협과 특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공제수익자 :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협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공제증권 :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협이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공제자 :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재해분류표(별표B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재해분류표"라 합니다)에 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수협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특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 수협이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 42 무배당 Sh어업인상해공제2501 약관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수협이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공제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 수협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공제금의 지급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수술(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4조 [공제금의 지급사유]

수협은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제수익 자에게 약정한 재해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별표2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

제5조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수협은 피공제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재해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급여금 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제6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수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해당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2.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수익자 에 대한 공제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제7조 (공제금의 청구)

- ① 공제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수협양식)
 - 2. 사고증명서(수술확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공제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공제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공제금의 지급절차]

① 수협은 제7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

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수협은 제1항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때 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A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특약의 해지)

수협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수협은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 화급금을 드립니다.

제4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수협이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다음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③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협이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 중 일정액을 수협 이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특약의 공제기간 중 수협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수협은 계약자가 특약의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수협이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

-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관 공제료의 납입

제12조 【특약의 공제료 및 수협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공제료는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공제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공제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수협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3조 【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수협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수협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공제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제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③ 수협이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수협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지화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 【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수협은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 협은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6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수협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수협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A 참조)에 따릅니다.
- ③ 수협은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1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2】

공제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수술 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하였을 경우(수 술 1회당)	20만원

- 주) 1. 피공제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재해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 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2.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협이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골절치료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수협(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업종 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 사이에 제3조(공제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공제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특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수협과 특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공제수익자 :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협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공제증권 :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협이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공제자 :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재해분류표(별표B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재해분류표"라 합니다)에 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수협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특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 수협이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수협이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공제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 수협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공제금의 지급

제3조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재해골절"이라 함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로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 (별표D 참조)에서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 ② "재해골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 [공제금의 지급사유]

수협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3조("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골절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별표3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

제5조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경우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 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

- 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6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수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해당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수익자에 대한 공제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제7조 [공제금의 청구]

- ① 공제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수협양식)
 - 2. 사고증명서(골절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공제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공제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공제금의 지급절차]

- ① 수협은 제7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② 수협은 제1항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때 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A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특약의 해지)

수협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수협은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립니다.

제4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수협이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다음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③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협이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 중 일정액을 수협 이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특약의 공제기간 중 수협의 승낙을 얻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수협은 계약자가 특약의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수협이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관 공제료의 납입

제12조 【특약의 공제료 및 수협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공제료는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공제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공제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수협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3조 [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수협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수협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공제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제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③ 수협이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수협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 【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수협은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 협은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6조 (해지화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 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수협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수협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 산"(별표A 참조)에 따릅니다.
- ③ 수협은 경과기간별 해지화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1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3]

공제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골절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진단 1회당)	10만원

- 주) 1. 동일한 재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의학 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2.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협이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재해입원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수협(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업종 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 사이에 제3조(공제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공제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특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수협과 특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공제수익자 :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협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공제증권 :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협이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공제자 :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재해분류표(별표B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재해분류표"라 합니다)에 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수협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특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 수협이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수협이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공제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 수협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공제금의 지급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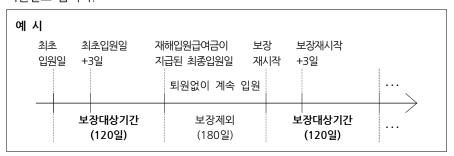
제4조 [공제금의 지급사유]

수협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별표4 "공제금 지급기준표"참조)

제5조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②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 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 예시와 같이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입원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재해입원급여급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공제자가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공제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수 협은 재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재해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 ⑦ 이 특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6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수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해당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2.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수익자 에 대한 공제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제7조 [공제금의 청구]

- ① 공제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수협양식)
 - 2. 사고증명서(입·퇴원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공제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공제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공제금의 지급절차]

- ① 수협은 제7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② 수협은 제1항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때 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A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특약의 해지)

수협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수협은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립니다.

제4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수협이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다음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③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협이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 중 일정액을 수협 이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특약의 공제기간 중 수협의 승낙을 얻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수협은 계약자가 특약의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수협이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관 공제료의 납입

제12조 【특약의 공제료 및 수협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공제료는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공제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공제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수협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3조 [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수협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수협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공제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제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 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③ 수협이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 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수협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 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 【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수협은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 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 협은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6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수협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수협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

산"(별표A 참조)에 따릅니다.

③ 수협은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1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4】

공제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입원 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 을 경우(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 1일당 1만원

주)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협이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이륜자동차및개인형전동장치운전중상해부보장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공제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청약하고 수협(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 가공수협을 포함합니다)이 승낙함으로써 주된 공제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수협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 【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공제자는 주계약의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4조 [특약의 공제기간]

이 특약의 공제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수협이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공제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수협은 공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공제계약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공제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주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이륜자 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 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 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용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외합니다)는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 통법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 ③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를 포함합니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 는 자동차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 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⑤ 피공제자에게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을 주된 판 다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및 해당 특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적용범위 등]

- ① 이 특약은 수협(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을 포함합니다)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청약하고 수협이 승낙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공제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하며, 이하"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공제(이하 "장애인전용공제"라 합니다)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이하 공제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료가 특별세액공 제의 대상이 되는 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 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의 세액공제)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 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 2. 상해보험
-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5.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제공제회법」및「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 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주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부가특약을 포함하며, 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모든 피공제자 또는 모든 공제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공제. 다만, 공제수익자가 법정상속인 등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 ①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3. 삭제
-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화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 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 ① 주계약의 피공제자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공제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모든 공제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② 주계약의 공제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공제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모든 피공제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③ 주계약의 피공제자는 비장애인이고 공제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공제로 전환을 원할 경우 공제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②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주계약의 "모든 피공제자 또는 모든 공제수 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 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등) 제1항 제 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수협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傷 痍者)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 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에 따라 수협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 우 계약자는 이를 수협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 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 [장애인전용공제로의 전환]

- ① 수협은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화대상계약을 장애인전용공제로 전화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공제로 전환 되지 않습니다.
- ③「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 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등)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공제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 계약 공제료는 공제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공제료로 표시됩니다.

2022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2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 하고 수협이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공제로 전환된 경우, 장애인전용공제로 전 환되기 전(2022년 1월15일~2022년 5월31일)에 납입된 전환대상계약공제료는 당해연도 공제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공제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공제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전환대상계약공제료만 장애인전용보장성공제료로 표시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공제로 전환된 당해연도에 전환

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등)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공제로 전환된 당해연도에 제4조(전환해 지)에 따라 전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공제료가 공제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공제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공제로 전환된 당해연도에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등)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납입된 전환대상계약공제료가 공제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 장성공제료로 표시됩니다.

⑥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해지)에 따라 전환을 해지한 경우」 또는 「전환대 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등)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등)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전환해지】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공제로의 전환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전환해지신청서를 수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増표A】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적립:	지급이자			
사고 공제금, 제1회 재해소득 보상급여금 또는 소멸에 의한 적립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공제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공제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공제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공제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만기공제금 (만기축하금) 및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공제계약대출이율		
제2회 이후 재해소득 보상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제기간 만기일 이내	평균공시이율		
		공제기간 만기일 이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공제계약대출이율		

- 주) 1. 만기공제금(만기축하금) 및 제2회 이후 재해소득 보장급여금은 수협이 공제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제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주계약 제8조(공제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가산이율 적용시 특약의 경우에도 상기 제4호를 준용합니다.
 - 6. 가산이율 적용시 해양수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공제의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2.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 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9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합니다.
- ※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재해 발생 시점에 적용되고 있는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재해분류가 변경되 더라도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공제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며, 2.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장해분류표

1 총칙

1. 장해의 정의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 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제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공제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 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 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72 ■ 무배당 Sh어업인상해공제2501 약관

-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 진단명 및 발생 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 0.06 "	25
5) " 0.1 "	15
6) " 0.2 "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 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 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 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 교하여 평가하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 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 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공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80 45 25 15 5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 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다.
-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 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 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 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 다
-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 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치료 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6 4 2 0
기능 장해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20 12
소견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 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 가) 뇌영상검사(CT, MRI)
 -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76 ■ 무배당 Sh어업인상해공제2501 약관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 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사하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 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0 80 60 40 20
7)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20 10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 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 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 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 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약)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 만 섭취 가능한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 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5) 개구강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 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 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 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하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 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 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 정한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 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 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 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다.
-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장해의 분류	지급률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50 30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20 15 10

-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 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착추체(착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착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강해 및 기형강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 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 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 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 이 90% 이상일 때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 이 60% 이상일 때
-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

- 이 40% 이상일 때
-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 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 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 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 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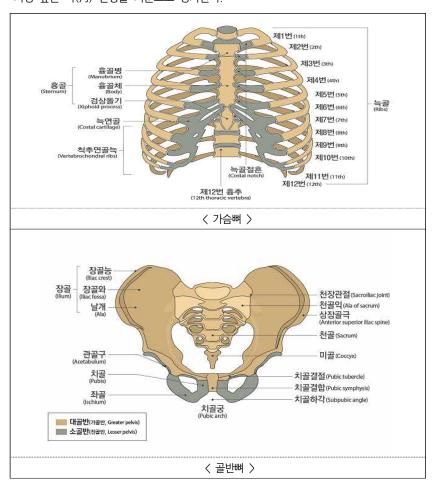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이상인 경우
 -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이상 남은 상태
-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8.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장해의 분류	지급률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30 20 10 5 2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 하다
-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장해의 분류	지급률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항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류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하다.
- 5) '하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 함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 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 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 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축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 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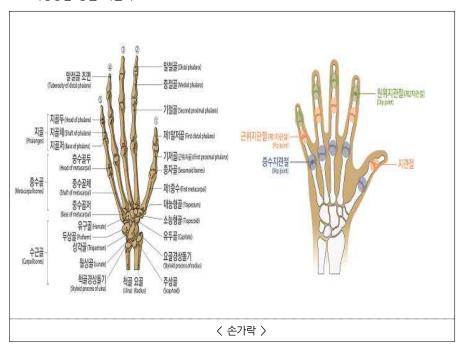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5 15 10 30 10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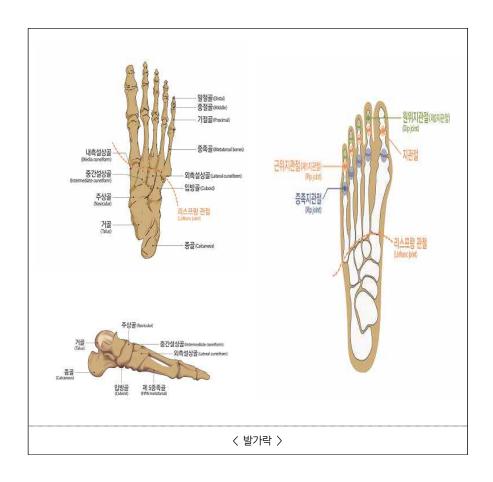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하다.
-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1. 발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 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30 10 5 20 8 3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강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독근 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하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 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 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 다) 가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 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 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 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 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7) 극심한 치매: CDR척도 5점 8) 심한치매: CDR척도 4점 9)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 10)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00 100 75 50 25 10 100 80 60 40 70 4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나)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 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 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 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가) 정신행동장해는 공제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수 있다.
- 나) 정신행동강해는 강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강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강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 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 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 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 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② 적절한 음식섭취, ④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⑤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②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⑩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⑪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 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 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 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 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 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 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 카)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되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 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 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 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 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 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 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 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ਜੇਲ	세한 정도에 따는 시합률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
이동 동작	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 (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15%)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5%)
목욕	 세안, 양치, 사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사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 한 상태(5%)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사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옷 입고 벗기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별표D】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파절 제외) 2. 목의 골절 3.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5. 어깨 및 위팔의 골절 6. 아래팔의 골절 7.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8. 대퇴골의 골절 9.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0.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1. 여러 신체부위의 골절 12. 상세불명 착추 부위의 골절 13. 상세불명 하지 부위의 골절 14. 상세불명 하지 부위의 골절 15.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문류번호 S02 (S02.5 제외)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 2

[※] 다만,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진단 시점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공 제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재해분류가 변 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